

2001년도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안내

협회에서는 원자력법 제105조, 동법시행령 제295조, 동법시행규칙 제104조제2항과 관련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기관의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선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대학교수 및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현장 책임자 또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규제기관의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종사자가 작업현장에 직접 적용할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.

교육훈련을 협회에 위탁 실시 할 경우 원자력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 의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교육신청방법

- 교육실시 5일전까지 교육훈련 신청서 및 위탁교육생명부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교육연구개발팀에 송부

교육비

- 교육신청시 무통장 입금
- 회원사(전년도 및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단체)는 교육비 할인 혜택

구 분	회 원 사	비 회 원 사
신규종사자	30,000원/인	90,000원/인
종 사 자	10,000원/인	30,000원/인

납부방법

- 협회 사업지원팀에 직접 납부 또는 온라인 송금
- 납입처 : 한빛은행(833-076021-13-001, 예금주: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)
- ※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나 교육연구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01년도 원자력법 제작 배포

협회는 지난 2001년 1월16일자로 개정 공포된 원자력법을 회원사의 방사선관련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제작하여 배포하였다.

앞으로 개정될 원자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등도 공포가 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배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.

방사선표준진료지침서 개발

- 방사선 사고시의 비상진료에 전기 마련 -

- 과학기술부에서는 방사선 사고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의 일환으로 「방사선표준진료지침서」를 개발하고 국·공립병원, 원전주변 비상진료병원, 119구조본부, 원전의 보건물리실 및 양호실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
- 이번에 개발된 「방사선표준진료지침서」는 방사선 사고시의 방사선량평가, 오염검사 및 제염, 방사선 손상의 응급의료 방법 등 일선 의료진 등이 의료실무 지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진료경험이 부족한 병원의 의사, 간호사 등 의료요원의 실무지침서로서 뿐만 아니라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교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.
- 「방사선표준진료지침서」의 개발에는 서울대 의과대학 박찬일 교수를 비롯하여 인하대 의과대학, 원자력병원, 한전의 방사선 보건연구센터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.
-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1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중에 있고 4기가 건설중이며, 방사성동위원소(RI) 등의 산업, 농업, 의료분야의 이용도 매년 10%씩 증가추세에 있어 방사선 이용기관도 1,700여개, 방사선작업종사자도 약 22,000여명에 달하고 있다.
- 따라서 이번 「방사선표준진료지침서」개발은 방사선 이용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사고시의 비상진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

□ 목 차

- 제 1 절 서론
- 제 2 절 방사선 물리학
- 제 3 절 방사선 생물학
- 제 4 절 방사선 측정기구
- 제 5 절 방사선량의 평가
- 제 6 절 방사선 사고시 응급치료
- 제 7 절 방사선 응급의료계획
- 제 8 절 방사선 사고의 응급의료 실례

과학기술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

- 과학기술부 서정욱장관은 2월 10일 청와대에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, 국민의 정부 3년간 착실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“실사구시·국리민복”의 과학기술로 국운 융성의 21세기, 세계일류 지식경제강국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. 이를 위해
- B-Korea 건설
 - 첨단·전통산업기술의 균형발전
 - 젊은 고급두뇌 수혈
 - 국민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 전개
 - 원자력 기술개발 및 안전성 강화
 - 21세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·시행 등을 금년도 중점추진 6대 과제로 제시하고, 국과위 중심의 국가자원 총동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.

[주요 내용]

원자력 非發電분야 육성

- 과기부는 세계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비발전분야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10% 수준인 비발전분야의 비중을 2010년까지 30%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고, 중장기 진흥계획은 금년중에 수립하기로 하였다.
- ※ 선진국의 非發電분야 비중 : 미국 80%, 일본 60%
 - 이를 위해 금년에 암치료용 동위원소 생산, 방사선이용 오폐수처리기술 등 복지기술 개발에 총 233억원을 투입한다.
 - 또한 방사선을 이용한 산업, 의료, 환경, 생명공학분야의 연구와 실용화를 위해 10만평 규모의 첨단 방사선연구센터를 금년에 착공하여 2003년 설립하겠다고 보고했다.

상수원 보호구역 유해물질 수송차량 통행제한에 관한 단속 안내

□ 통행제한 목적

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원 통행제한 지정 도로에서 유류·유독물등 수질오염물질 수송 차량의 통행을 제한 및 지도단속을 함으로써 수도권 주민에게 맑은물을 공급코자 함.

- 이에 따라 「양평경찰서」에서는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계획을 우리 협회에 통보해 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□ 통행제한 근거법령

-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의3(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)
-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3(통행제한도로 구간 및 자동차등)

□ 통행제한 대상차량

- 유류 유독물, 특정수질유해물질, 지정폐기물(액상), 농약 및 원재,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을 수송하는 차량

※ 위 대상차량중 통행가능 차량

- ◆ 군용차량
- ◆ 농가등 실수요자들이 농약을 사용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차량
- ◆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

□ 통행제한도로 위반차량 벌칙

- 수질환경 보전법 제57조의 4
- 통행제한도로로 통행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
□ 통행제한 도로(양평경찰서 관할 구역)

- 국도 6호(양수대교, 용담대교)
 - 시점 :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
 - 종점 :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
- 지방도 337호(남종면, 강변도로)
 - 시점 :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
 - 종점 :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

□ 단속계획(2001. 2. 16부터)

- 분기1회 유관기관 합동단속
- 교통경찰 및 112순찰차량 수시단속